

# 교원업적평가규정

2003.08.01. 제정  
2015.09.01.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원의 교육 및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및 연구를 촉진하고, 교원의 교육, 연구, 봉사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재임용 및 승진임용제도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등 교원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수업적의 평가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범위)** ①교원업적 평가는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활동영역 대하여 시행한다.

②각 영역의 평가는 ‘교원업적심사 평정표’ (별지 서식 1)에 의한다.

③각 영역 평가의 종합평가는 ‘교원업적심사 종합평정표’ (별지 서식 2)에 의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시기)** ①교원업적평가 대상은 전임교원으로 하며, 평가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의 학기 말에 실시한다. 다만,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 대상 교원에 한하여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평가한다.

②재임용 또는 승진임용시 평가 결과의 반영 비율은 임용기간 중 평가된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기간으로 나눈 평균 점수로 한다.

**제4조(평가영역별 반영비율)** 제2조에 의한 각 영역별 평가 점수는 연구활동, 교육활동, 봉사활동을 각각 4:4:2의 비율로 하여 종합 평가한다.

## 제2장 평가절차 및 위원회

**제5조(평가심사대상자 통보)** 교무처장은 제3조에 정한 시기마다 해당자에게 교원업적평가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제출기한 및 제반 서식 등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업적평가심사의뢰서 제출)** ①평가심사 대상자는 제3조에 정한 기한 내에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제반 증빙자료를 갖추어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교무처장은 제출된 업적평가심사의뢰서의 내용을 확인, 검토한 후 이를 교

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게 한다.

③업적평가심사의뢰에 필요한 제반 서식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및 기능)** ①제2조에서 정한 업적의 평가를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총장은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전·현직 영어교육관련 교수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5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 및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매년 1월과 7월에 다음 학기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한 교수업적 평가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⑤위원회는 위 4항에 해당하지 않는 전임교원의 연간 업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기의 말일 이전에 총장에게 보고한다.

⑥위원장은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한 사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가위원을 도와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간사는 본교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직원 중에서 총장이 정한다.

### 제3장 연구활동 평가

**제8조(평가대상)** ①연구실적물의 평가 대상은 임용(승진임용 포함)된 학기로부터 제3조가 정하는 시기가 속하는 학기까지 발표된 것으로 한다.

②발표시기는 발간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당시에 최종 실적물이 미비된 것은 발간 기관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단, 평가가 있는 학기말까지 당해 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당 평가 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하여 누락된 연구실적물은 해당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바로 다음의 평가에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중복평가 금지)** 동일한 내용의 논문과 기타 연구 출판물은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연구실적평가의 대상)** 연구실적의 평가는 논문, 저서 및 기타 본 규정이 정하는 연구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공동연구실적의 평가)** ①공동연구실적의 평가는 본 규정의 ‘연구실적물

의 인정 범위 및 환산율' (별표 1)에 의한다.

②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겸인정 교과서의 집필과 연구 책임자가 명백하고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의 기여율을 50%로 인정한다.

**제12조(연구 실적물의 평가)** 연구실적물의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보직교수의 연구업적 인정)** 학교법인 혁제학원 정관의 직제상 처장에 해당하는 보직 교수의 연구 업적을 1년에 100%로 인정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로 인정한다.

#### 제4장 교육활동 및 봉사활동의 평가

**제14조(교육활동 및 봉사활동 실적의 평가대상 및 기준)** 교육활동 및 봉사활동의 평가대상 및 배점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15조(평가대상 기간)** 평가 대상 기간은 연구실적 평가 대상 기간과 같다.

**제16조(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교육활동 및 봉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 담당에 대한 평가에서 수업은 일반 전공강의, 실습, 실기, 세미나 형태를 포괄한다. 한 과목을 여러 교수가 담당할 경우, 한 교수가 학기 중 총 시간의 3분의1 이상을 담당할 경우에 한하여 1개 담당과목으로 인정한다. 다만, 과목 당 3분의1 미만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각 과목당 담당율을 0.5로 인정한다.
2. 본인의 사정이 아닌 사유에 의하여 수업 담당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 수업에 해당하는 학점을 담당 학점 수에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실험, 실습, 실기과목의 학점산정은 교과과정표상의 학점으로 환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새 교재 개발에는 교재,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5. 교육부문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실적평가 항목들은 동일 과목에 한 가지 이상 적용할 수 없다.
6. 강의평가에 관한 실적평가는 강좌별로 하며 동일한 내용의 수업으로서 한 학기 동안 2강좌 이상 진행한 것에 대한 평가는 각각 별개

의 강의로 간주한다.

7. 학회활동의 봉사활동 인정 범위는 해당 분야의 전국 규모 대표적 학회 및 학회지의 학회장, 이사 및 편집위원에 6개월 이상 재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7조(봉사 점수의 가감)** ①교원이 소속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는 (별표 4)에 관계없이 1년 단위로 5~10점 범위 안에서 봉사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교원이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학교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현저히 해태한 경우, 또는 학교의 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4)에 관계없이 1년 단위로 5~10점 범위 안에서 봉사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사점수를 가감하고자 할 때는 교무처장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년 및 휴직교수의 평가)** ①1년 또는 반년 연구년 교수는 연구년 기간 동안 교육 및 봉사활동 총점의 90%를 인정한다.

②수업경감 연구년 교수는 연구년 기간 동안의 수업량으로 책임수업을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휴직교수의 경우는 본교 관련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구년 교수에 준하여 인정한다.

**제19조(기타 세부사항)**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1] 교원업적심사 평정표

교원업적심사 평정표

평정대상자 소속:

직급:

이름:

평가 부문	내용 (평가 항목)	평점	
<b>1. 연구활동 평가표</b>			
학술 논문			
단행본 및 교재			
학술회의 활동			
연구비 및 용역			
소프트웨어, 연구보고서 및 기타			
총 점			
<b>2. 교육활동 평가표</b>		<b>가을학기</b>	<b>봄학기</b>
수업담당	(1) 책임 담당 시간 충족		
논문 및 작품지도	(1) 논문 및 작품 지도		
강의 평가	(1) 강의 평가 결과		
새로운 시도	(1) 새 과목 개발 또는 담당		
	(2) 새로운 교수법 도입 또는 성과물 산출		
총 점			







<별표 1> 연구 실적물의 인정 범위 및 환산율(%)

구 분	1인 연구	2인 연구	3인 연구	4인 이상 연구
<b>학술논문</b>				
해외저명 학술지	150	105	75	45
해외 학술지	100	70	50	30
국내저명 전문학술지	120	85	60	35
국내 전문 학술지	100	70	50	30
국내 기타 학술지	80	55	40	25
<b>단행본(괄호 속은 편저의 경우임)</b>				
전문학술저서	200(160)	150(120)	120(100)	100(80)
전공관련 일반 저술 및 교재	180(150)	150(120)	120(100)	100(80)
전문학술 번역서	150	120	100	80
전공관련 일반 번역서	120	100	70	50
일반 번역서	100	70	50	30
<b>교재 집필</b>				
교육부인정교과서(영 어)	150	120	100	70
기타 일반 교재	120	100	70	50
<b>학술회의 활동</b>				
전국학술회의에서 발표	60	50	30	20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	80	60	50	30
<b>연구비 수혜(1인당)</b>				
학술연구비 (500만원 이상)	100	70	50	30
학술연구비 (500만원 미만)	80	50	30	20
연구 용역 (1000만원 이상)	100	70	50	30
연구 용역 (1000만원 미만)	80	50	30	20
<b>기타 연구저작물</b>				
소프트웨어, 연구보고서 및 기타	100	70	50	30

1. 학술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해외 저명 학술지: 국제학술지 평가 자료(ISI에서 선정한 SCI,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2) 해외 학술지: ‘해외 저명 학술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국제 심사제 학술지를 말한다.
  - 3) 국내 저명 전문 학술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4) 국내 전문 학술지: ‘국내 저명 전문 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국내 심사제 학술지를 말한다.
  - 5) 국내 기타 학술지: 위의 (3), (4)에 해당하지 않는 학술지를 말한다.
  - 6) 전문학술저서’는 영어교육 및 인접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서를 말한다.
  - 7) 전공관련 일반 저술 및 교재’는 영어 교육 및 인접 분야와 관련해서 일반 대중용이나 강의용 교재로 저술한 것을 말한다.
  - 8) 전문학술 번역서’는 영어교육 관련 전문 학술 번역서를 말한다.
  - 9) 전공관련 일반 번역서’는 영어교육 및 인접 분야와 관련된 번역서를 말한다.
  - 10) 일반 번역서’는 영어 교육이나 인접 분야와 관련되지 않는 분야의 번역서를 말한다.
  - 11) 교육부 인정 교과서’는 제 1종 및 2종 교과용도서로 1, 2학기 교과서 전부를 1권으로 인정한다
  - 12) ‘기타 일반 교재’란 각급 학교나 일반인의 영어 학습 또는 이와 관련해서 발행하는 도서를 말한다.
  - 13) ‘학술회의 활동’이란 국제 및 국내학술대회에서 행한 강연 및 발표한 논문(proceedings 포함)을 말한다. 다만, 프로그램에 등재되거나 초록집에 수록된 것에 한한다.
  - 14) ‘학술 연구비 수혜’란 연구 산출물로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에 기반하여 연구비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학교 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5) ‘연구 용역’이란 연구 활동의 결과를 논문이나 보고서 이외의 형태로 산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 16) ‘소프트웨어’란 교육용, 상업용 및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람이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7) ‘연구 보고서’란 외부 기관에서 위촉받은 연구 보고서로 공식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 18) ‘기타’ 연구 저작물이란 본 인정 범위에 열거되지 않은 연구물 중에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연구의 성과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19) 연구실적물의 인원수 산정은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에 한한다.
2. 저작물의 개정판 (검인정교과서 제외)은 개정 비율과 초판의 평가 점수를

참작하여 평정하되, 그 평가 점수는 초판 평가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비율은 개정된 부분의 분량 이외에 개정의 수준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3. 동일한 내용의 논문과 기타 연구 출판물은 중복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연구 활동 평가항목과 배점

항 목	비 율	배 점
학술 논문	150% 이상	40점
	120% 이상	35점
	100% 이상	30점
	80% 이상	25점
	60% 이상	20점
	40% 이상	15점
	20% 이상	10점
단행본 및 교재	150% 이상	40점
	120% 이상	35점
	100% 이상	30점
	80% 이상	25점
	60% 이상	20점
	40% 이상	15점
	30% 이상	10점
학술회의 활동	80% 이상	15점
	50% 이상	10점
	20% 이상	5점
연구비 및 용역	100% 이상	15점
	50% 이상	10점
	20% 이상	5점
소프트웨어 및 기타	100% 이상	15점
	60% 이상	10점
	30% 이상	5점

1. 평점의 총점이 40점을 넘지 못한다.

<별표 3> 교육활동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수업담당	(1) 책임 담당 시간 충족	20점
논문 및 작품지도	(1) 논문 및 작품 지도	3점
강의 평가	(1) 강의 평가 결과	20점
새로운 시도	(1) 새 과목 개발 또는 담당	4점
	(2) 새로운 교수법 도입 또는 성과물 산출	3점

1. 학기당 책임 담당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 학점당 2점씩 감한다. 다만 학사 운영상 불가피성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담당 수업에 대한 평가는 일반 전공 강의, 실습, 실기, 세미나 형태를 포함한다. 한 과목을 여러 교수가 담당할 경우에는 학기 중 총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한 경우에 한하여 1개 담당과목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본 규정 16조 1호에 따른다.
3. 학교 내의 제반 사정으로 수업 책임 시간을 담당하지 못하고 이를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담당한 과목수에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실험, 실습, 실기과목의 학점산정은 교과과정상의 학점으로 환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삭제)
6. 강의 평가에 관한 실적평가는 강좌별로 하며 동일한 내용의 수업으로서 한 학기 동안 2강좌 이상 진행한 것에 대한 평가는 각각 별개의 강의평가로 간주한다.
7. ‘강의 평가’ 영역의 평가는 학기당 담당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강의평가 점수	점수
4.5이상	10점
4.3이상	8점
4.0이상	6점
3.8이상	4점
3.5이상	2점
3.5미만	0점

8. 평점의 총점은 40점을 넘지 못한다.

<별표 4> 봉사활동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학내봉사	(1) 행정기관의 처장	9점
	(2) 학과장, 부속기관장	7점
	(3) 각종 위원회 위원	3점
	(4) 학생 활동 지도	5점
교외봉사	(1) 국가 단위 각종 위원회 위원	7점
	(2) 교사/전문가 집단 활동	5점
	(3) 외부 강연/연수 (1회)	3점
학회활동	(1) 학회 회장	5점
	(2) 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	3점
봉사활동관련 수상 및 공훈	(1) 국제 단체에서 수상	8점
	(2) 국가기관에서 수상	5점
	(3) 공공기관에서 수상	3점
기타 활동		3점

1. 학생 진로 및 활동 지도는 정규 교육활동 외에 학생의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로상담, 학술활동 지도 등이 해당한다.
2. (삭제)
3. 국가 단위 각종 위원회 위원은 장관급 이상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교사/전문가 집단 활동은 영어교사 및 전문가의 공식적인 공개모임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학회활동의 인정 범위는 해당 분야의 국제 학회 또는 전국 규모의 대표적 학회 및 학술지의 학회장, 이사, 편집위원 등으로 6개월 이상 재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6. ‘기타 활동’은 위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으로 본교의 위상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말한다.
7. 평점의 총점은 20점을 넘지 못한다.